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 활용과 시사점: 중국 화장품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Use of non-Tariff Barriers for protection of domestic industries and its implications: focusing on the Chinese Cosmetic Certification System

윤 성 욱** Sung-Wook Yoon

이한다라*** Handara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문제의 제기 | IV. 비관세장벽으로서 위생행정허가제도의 문제점 |
| II. 비관세장벽을 통한 자국 산업보호 | V. 결론 및 시사점 |
| III. 중국의 화장품인증제도: 위생행정허가제도 | 참고문헌 |
| | Abstract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화장품 인증제도가 한국의 수출업체들에게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 비관세장벽으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은 한국 화장품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서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은 대중(對中)화장품 수출업체에게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수입화장품 인증제도의 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①정보유출 ②중복검사 ③시간 지연의 문제점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아울러 대중(對中)화장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 본 논문은 교신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활용되었던 자료들 중 일부가 활용되었으나, 연구 주제나 자료 활용 방법 등에 있어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힘.

**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제1저자

***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충청북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부), 교신저자

인터뷰를 시행함으로써 도출된 문제점을 실증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화장품 인증제도는 중국 화장품 산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육성을 위해 수입화장품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제어) 비관세장벽, 화장품인증제도, 무역장벽, 중국 화장품산업

I. 서 론: 문제의 제기

GATT 체제를 거쳐 WTO 설립, 다수의 지역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관세의 철폐 또는 감축은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사실상 감축되거나 철폐된 관세의 부활이 어려워지면서 국가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도구를 찾아야했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이다. 이로 인해 국가 간의 통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WTO는 분쟁해결절차 등을 통해 국제교역에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산업 보호 - 선진국의 경우 사양산업에 대하여,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유치산업을 중심으로 -가 일종의 국가의 역할처럼 인식되는 상황에서 국가들은 WTO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지속해 왔다.

일반적으로 비관세장벽이란 관세 이외에 상품의 교역, 교역량, 또는 가격 등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단을 의미한다.¹⁾ 비관세장벽의 정의가 관세 이외의 정책 수단을 의미하다 보니 사실상 비관세장벽의 종류와 범위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정도로 다양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다.²⁾ 그 중 본 연구는 UNCTAD(2012)의 비관세조치 분류에 주목한다. UNCTAD는 수입에 있어 비관세장벽을 기술적 장벽과 비기술적 장벽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기술적 장벽은 위생 및 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그리고 선적 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를 포함한다. 앞서 UNCTAD

1) UNCTAD, "Definition of NTMs" <https://unctad.org/en/Pages/DITC/Trade-Analysis/Non-Tariff-Measures/NTMs-Classification.aspx> (검색일: 2018년 10월 25일).

2) 이에 본 연구는 비관세장벽의 다양한 정의, 종류, 범위 등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논의를 하지 않겠다. 이러한 이유로 UNCTAD는 IMF,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들과 Multiple Agency Support Team(MAST)를 2006년 설립하여 비관세장벽의 정의, 분류 시스템 등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UNCTAD, "MAST Group" <https://unctad.org/en/Pages/DITC/Trade-Analysis/Non-Tariff-Measures/MAST-Group-on-NTMs.aspx> (검색일: 2018년 10월 25일) 및 김종택 외(2016) 참조.

의 비관세장벽 정의를 인용함에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상기 3개의 항목 중 특히 TBT와 연계된 비관세장벽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TBT가 비관세장벽 중 WTO에 통보된 건수가 2017년에 총 2,5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10년간 109%나 증가했기 때문이다(KOTRA 2018). 그러나 무엇보다도 2017년 WTO에의 TBT 통보건 중 개발도상국 비중이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통보 건수 기준으로 중국은 2위를 기록하고 있다.³⁾

이에 본 연구는 세계 제1의 시장이자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인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중국의 비관세장벽 중 TBT - 화장품 인증제도 - 를 활용한 ‘화장품 산업 보호’를 그 대상으로 한다. 중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535억 달러 정도로 미국(약 860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가 지난 5년 동안 약 1.7% 성장하였고, 전년 대비 2017년 미국이 3.1% 성장한 것에 비해 중국은 9.6%의 성장을 기록하였다는 것이다(NEWS 1, 2018.5.21.).⁴⁾ 아울러 THAAD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수입 규제 강화 및 중국 관광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준 국내 화장품 수출과 무역 흑자 규모는 각각 18.3%, 18.5% 증가하였다. THAAD 여파로 중국 수출 점유율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39.1%)과 홍콩, 대만 등 중화권 국가로의 수출 비중은 전체 화장품 수출의 66.9%에 이른다(한국일보, 2018.7.13).⁵⁾ 한국의 화장품 수출에 있어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막대하다는 점,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 그리고 중국의 수입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 강화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화장품 산업 보호 정책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또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비관세장벽의 유형에 대한 학문적 고찰일 뿐만 아니라 국내 화장품 업계의 수출 강화 전략 마련, 나아가 우리 정부의 적절한 대응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충청북도 소재 대중(對中) 화장품 수출업체 54개를 대상으로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설문조사 및 면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여, 수출 현장에서 체감하는 비관세장벽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설문조사는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 시장 진출에 방해되는 정책(policies), 조치(measures), 또는 항목(items) 등을 자유 해답(open-ended) 방식으로 기술하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가 설문조사로 수집한 자료에

3) 국가들이 기술규제를 도입하는 목적은 건강과 안전(1,251건, 48%), 품질 보장(450건, 17%), 환경보호(326건, 13%), 소비자 보호(299건, 12%) 등이었다(KOTRA 2018: 6).

4) 한국은 전년 대비 2017년 약 0.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시장규모는 약 125.6억 달러로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다(NEWS1, 2018.5.21.).

5) 한국일보(2018.7.13.)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의 대중국 수출은 2015년 47.8%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는 23.1% 증가에 머물렀다. 한편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9%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⁶⁾ 화장품 완제품 또는 원료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업체, 그 중에서 중소기업들을⁷⁾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문헌 등에서 다루는 비관세장벽 목록의 열거보다는 실질적인 비관세장벽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본 논문 IV장에서 논의될 것이며, 중국의 화장품 산업관련 비관세장벽이 한국 화장품의 중국 시장 진출에 어떠한 방식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규명하도록 하겠다. 이에 앞서 II장에서는 비관세장벽과 산업보호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중국이 도입한 화장품 인증제도인 위생행정허가 제도와 문제점은 III장에서 분석하도록 하겠다. V장은 본 논문의 결론으로 연구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II. 비관세장벽을 통한 자국 산업보호

역사적으로 경제위기 시 국가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정책을 반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과거의 관세 수준으로의 회귀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각국이 비관세장벽을 경쟁적으로 높이는 상황을 초래하게 만들었다(Harrigan, 1993). 2008년 경제위기 당시 개최되었던 G20 정상회의에서도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조치 자체(Standstill)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G20중 17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 47개의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 중 비관세조치는 전체 약 2/3에 해당한다.⁸⁾ 물론 비관세장벽이 자국 산업 보호, 나아가 자국의 경제 침체 극복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Foroohar 2016; Cambell 2018; Volle 2018). 대표적으로 과거 경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정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기대와 달리 외국의 보복적 보호무역조치를 확산시켰으며 경기침체를 더욱 깊고 장기화시킨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과 우려에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활용하는 근본적

6) OECD(2005, 21)의 비관세장벽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는 대상 기업의 선입관, 문제 제기에 따른 불이익 발생 우려, WTO가 인정하는 조치 여부에 대한 인식 결여 등의 요인들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7)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 중에 다시 언급되겠지만, 현지 조사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대응책(예: 현지 공장 설립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8) 이와 관련하여 'G20 Commitment on "Rejecting Protectionism" Compliance Performance Report' (<http://www.g20.utoronto.ca/analysis/2009protectionism0331.pdf>, 검색일: 2018년 10월 20일) 참조. 아울러 경제위기 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비관세장벽을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이상민(2004), Saito(2010), 및 Bradley(2011) 참조.

인 원인은 1970년대를 전후로 한 세계 경제의 구조변화에서 발견되어 진다. 1960년대의 단순 노동집약적 제품이 자본 및 기술집약적 제품으로 비교우위가 이전되면서 국가별 비교우위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개발도상국의 경공업·중화학 중심의 수출 강화는 선진국들이 방어적 형태의 산업구조조정에 치중하게 하였으며 국제적 산업구조조정을 지체시켰다. 이로 인해 제조업 분야에서 선진국 간 산업구조가 유사해졌고, 개발도상국은 공업화로 선진국과 동일한 형태의 산업구조로 변화되었다(최용석·차문중·김종일, 2006; 오영석, 2017). 결국 공산품의 공급과잉은 국가 간 빈번한 통상마찰을 불러 일으켰으며 선진국 주도의 신보호무역주의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1990년대 이후 중국을 위시한 개발도상국들이 과거 ‘수입대체 산업화(import-substituting industrialisation)’ 정책에서 벗어나 ‘수출 지향적 산업화(export-oriented industrialisation)’ 정책으로 전환하였다(박지영 2017). 이는 개발도상국들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이 자국 내에서 생산 및 소비되는 재화생산에서 수출 가능한 제조업 분야로 이동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Autor et al.(2016)의 연구는 특히 미국 내에서 외국 제품과 경쟁에 직면한 산업들의 경우 - 특히, 중국과의 무역증가로 - 임금과 노동력 참여율이 침체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결국 비교우위에 근거한 산업을 특화시킴으로써 국제 교역에 효율을 높이고 시장 접근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교역의 순기능과 혜택보다는 교역에 따른 비용에 대한 고려가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듯 신보호무역주의는 선진국에 의해 시장교란의 방지 측면에서 수동적으로 산업구조 변화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비관세장벽이 사용된다(Baldassarri, 1996).⁹⁾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비관세장벽을 활용한다는 점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동일하다. 이미 성숙단계로 진입한 선진국의 산업이 개발도상국에 진입할 경우, 현재는 미성숙 산업으로 자국 내에서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군은 경쟁에서 도태되게 된다(김석준, 2002).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비관세조치와 같은 보호무역정책을 통해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국제경쟁력을 갖추기까지 육성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유치산업보호론을 근간으로 오늘날 미국과 독일이 산업 강국으로 성장하였다는 사실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활용하는 논리에 타당성을 심어줄 수 있다.¹⁰⁾

9) 보호무역주의는 국가별, 형태별로 다양하게 존재해왔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물론 또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보호무역주의와는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박지영(2017, 24)에 따르면, 미국 및 영국 등의 선진국이 주도하는 ‘신보호주의’는 보호무역정책 외에도 반이민정책, 반해외직접투자 등의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까지 제한을 강화하고 있어 과거의 보호무역주의보다 광범위한 보호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본다.

10) 유치산업보호론(Infant industry argument)은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이 최초로 주창하였으며 독일의 리스트(Friedrich List)에 의해 정립되었다(Rushford, 2003).

물론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조치 정책 결정에 대해 비판도 존재한다. 우선 어떤 산업이 유치산업인가에 대한 판단은 대내외적으로 문제 제기의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치산업이란 현재 비교열위 산업이지만 경쟁력 향상에 잠재력이 있으며 국가주도의 보호육성정책을 통해 비교우위 산업으로 진입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을 의미한다(Juan He, 2015). 유치산업으로 결정된 산업군은 한층 강화된 규제도입으로 보호되지만, 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비교우위 산업군은 높아진 진입장벽으로 인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각국이 전략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유치산업보호책을 과도하게 실시할 경우 국가간 분쟁이 발생하고 국제교역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무시할 수 없다(최낙균, 김정곤, 박순찬, 1990).

결론적으로 비관세장벽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제 교역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비관세장벽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관세 장벽을 통한 보호무역이 경제발전에 중요한 요소였음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유치산업의 경우 이론적으로 ‘산업 발전에 따른 소득 증가’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지만, 사실상 소위 현재의 선진국들은 관세를 통한 보호 없이 생존하기 어려운 유치산업들을 비관세장벽을 통해 소득 증가에 기여하게끔 만들었다(Hagen 1958, 513).¹¹⁾ 아울러 비관세장벽의 활용은 - 이론적으로 국제교역에 참여하는 어떠한 주권 국가든 비관세장벽을 활용할 수 있지만 - 일반적으로 제도적 고립(institutional insulation)과 자율성(autonomy)이 높은 수준인 큰 국가들(large states)에서 최고조로 나타난다(Mansfield and Busch 1995). 즉, 강력한 자국 기관들이 정책 결정자들을 자유교역을 선호하는 다양한 이익단체들과 격리시킬 수 있고, 비관세장벽을 활용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때 비관세장벽을 활용한다는 의미이다(Mansfield and Busch 1995, 747).

그러나 전반적인 글로벌 산업의 상향 평준화 양상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계가 모호해 지고 있으며 사양산업과 유치산업의 구분도 쉽지 않다. 본 논문의 논의 대상인 중국의 화장품 산업을 볼 때 중국이 선진국인지 또는 개발도상국인지에 대한 논의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몇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다. 첫째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의 급속한 증가이다. 둘째는 중국 로컬 브랜드의 급성장, 즉 ‘상향 평준화’ 경향이다.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높은 위상과 점유율은 대부분 외국 업체들이었지만, 중국의 화장품 업체들의 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화장품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이 높지 않은 일종의 유치산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성장이 과연 중국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 정책, 다시 말해 외국 화장품에 대한

11) Hagen(1958, 513)은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많은 국가들 - 예를 들어, 미국, 일본, 소련, 브라질 등 - 의 1인당 소득의 급격한 성장 등과 같은 경제발전 뒤에는 보호주의 장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보호주의하에서 산업, 특히 제조업의 발전은 1인당 소득의 급격한 증가에 크게 기여를 했다는 의미이다.

중국 정부의 규제가 역할을 했는지가 관건이다.¹²⁾ 다시 말해 중국의 외국(한국) 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중국 화장품 산업의 성장과 한국 화장품의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 장벽이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 중국 화장품 시장 진입에 있어 가장 심각한 비관세장벽으로 여겨지는 것은 중국의 화장품인증제도이다. 중국은 자국의 화장품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수입화장품 인증에 따른 규제 강화로 자국 내 수입화장품의 유입과 성장을 제한하기 위해 화장품 인증제도인 ‘위생행정허가’ 제도를 도입하였다.¹³⁾ 그렇다면 중국의 화장품인증제도가 국내 화장품 수출업체들의 중국 시장 진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다음 III장에서는 중국의 화장품인증제도는 무엇이고,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규명하도록 하겠다.

III. 중국의 화장품인증제도: 위생행정허가 제도

중국은 1989년 위생부(National Health Commission, NHC)가 공포한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와 그 실시세칙이 위생행정허가 관련 중요한 법규이며, 위생행정허가 부문의 화장품 감독관리 역할과 임무가 규정되어 있다(오만용, 2003).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생산기업 위생허가증 및 특수용도화장품의 심사허가, 화장품 생산기업에 대한 위생감독, 관할기관 및 벌칙 등이며 특히 수입화장품의 심사 및 허가 조항 삽입으로 수입 화장품에 대한 별도의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¹⁴⁾ 이러한 국내 및 수입 화장품을 별도로 관리하는 이원적 제도는 중국으로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해 자국 화장품보다 검사·검측상의 높은 규제를 요구하며,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수입화장품에 대한 위생행정허가 제도는 더욱 세분화 되고 있다.

수입화장품에 대한 위생행정허가는 대리상(재중국책임신고회사) 선정을 통해 중국식품

12) 중국 로컬 브랜드들은 과거에는 한국이나 글로벌 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코스맥스, 한국콜마 등 한국의 기술력을 지닌 업체를 통한 ‘제조자 개발생산(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ODM)’ 방식으로 품질이 개선된 제품을 출시 및 판매하면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중앙일보, 2018.10.25.).

13) 물론 이러한 인증제도가 중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화장품 산업이 성숙·포화 단계에 도달한 선진국은 산업의 성장 과정을 거치며 발전한 높은 수준의 기술규정을 화장품 인증에 적용시켜 외부상품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으며(이정자, 이명규, 2008), 개발도상국의 경우 화장품 산업이 아직 생성·성장단계이므로 자국 내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해 수입화장품에 대한 인증 강화로 외부상품의 유입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정인교, 2009). 이처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화장품 인증을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다르나 자국 산업 보호라는 측면에서의 목적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14) 대한화장품협회(2017), 중국화장품 관련 법규집(번역판) NHC 제13호「화장품 위생감독 조례 실시세칙」 참조.

의약품관리총국(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FDA)의 인터넷 신고시스템에 기업 및 제품을 등록하고 시험검사와 기술심사를 거치면 CFDA에서 위생행정허가증을 발급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표 1〉참조).

〈표 1〉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절차

	주요절차	세부내용
①	제중국신고책임회사 선정	중국 내 법인등록 업체
②	CFDA인터넷 시스템 기업정보 및 제품정보 등록	- 관련기관 : CFDA 행정접수서비스센터 수권서, 기업정보 및 제품 전성분표 등록 - 소요기간 : 5일
③	위생안전성검사 ※불합격시 재신청	- 관련기관 : CFDA공식 지정 시험기관 - 소요기간 : 특수용도화장품 : 약4개월~8개월 비특수용도화장품 : 약2개월~3개월
④	CFDA기술심사	- 관련기관 : CFDA보건식품심사평가센터 - 소요기간 : 특수용도화장품 : 심사 90일, 비준 20일 비특수용도화장품 : 심사 20일
⑤	위생행정허가증 발급	관련기관 : CFDA 행정접수서비스센터

출처 : NHC(1991), 제13호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 실시세칙’ 참조하여 필자 정리

〈표 1〉에 제시된 위생행정허가 절차는 단계별 관할기관 및 심사기간이 상이하고 과정마다 요구되는 주요법규와 하부규칙들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중국으로 처음 수출하는 화장품은 반드시 이러한 절차와 규정에 부합한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항목별 서류제출이 요구된다.¹⁵⁾ 수입화장품 위생행정허가에 요구되는 각 단계별 규정은 무엇이며 이에 따라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5) NHC 제13호「화장품 위생감독조례 실시세칙」제4장 수입화장품의 심사 및 허가조항 제22조에 따라 수입화장품의 위생행정허가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한다. (1) 중국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해외 제조업체 또는 그 대리상이 반드시 수입지, 시 이상의 위생행정부(현, CFDA)에서 ‘수입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신청서’를 수령, 3부 작성하고, 직접 국무원 위생행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아래의 자료와 샘플을 제출해야 한다. 1. 제품명칭, 유형 2. 제품성분, 제한물질의 함량 3. 제품품질표준 및 검사방법, 또한 증문번역본 4. 제품의 생산국(지역)의 생산 및 판매허가의 증명서 5. 제품의 기타 국가(지역)에서 등록 및 판매허가의 증명서 6. 제품의 생산국(지역)과 기타국가(지역)에서 통과한 생산, 등록, 판매의 허가심사 평가보고서 및 증문번역본 7. 제품의 위생안전성평가자료 또는 제품의 위생품질 검사보고서 8. 제품라벨, 사용설명서 및 증문번역본 9. 포장에 완전한 제품샘플 (2) 국무원 위생행정부는 모든 신청 자료를 접수 받은 후, 화장품 안전성평가단을 구성하여 신청된 제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 및 허가번호를 발급 받는다. 국무원 위생행정부는 모든 신청 자료를 접수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화장품 안전성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후 2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허가의 상황은 수입지역 성, 자치구, 직할시의 위생행정부에 동시에 통보한다.

1. 재중국책임신고회사 선정

위생행정허가증 취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대리상 즉, 재중국책임신고회사 선정이다. 중국으로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tat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FDA) 856호 『화장품 행정허가 신고, 접수규정』 제5조에 따라 ‘재중국신고책임회사(이하 책임회사)’ 위임을 통해 위생행정허가증의 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본 규정에 따르면 중국산 화장품의 행정허가 신청인은 화장품 생산업체이지만, 수입 화장품의 신청인은 중국 내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독립 법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를 의미한다.¹⁶⁾ 화장품 수출업체는 하나의 책임회사만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책임회사는 수출업체로부터 위생행정허가 관련 모든 행정 권한을 위임받기 때문에 위생행정허가증 취득 여부는 책임회사의 업무역량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장품 수출업체는 중국 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유통회사 또는 경험 있는 전문 대행업체를 책임회사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의 수입화장품 위생행정허가 규정에 따라 화장품 수출업체는 책임회사에 위생행정허가 시 단계별로 요구되는 자료 일체, 예를 들어, CFDA 인터넷 시스템 기업정보 및 제품정보 등록 시 제품명 및 전성분표, CFDA 기술심사 생산공정 및 제품기술 등을 넘기게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책임회사는 수출업체의 핵심기술에 대한 정보파악이 용이하므로 수출용 화장품 생산업체의 핵심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책임회사선정 시 신중을 기할 것이 요구되나 사실상 신뢰성 높은 업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한 실정이다(뷰티경제 2016.07.01.).

2. CFDA 기업정보 및 제품정보 등록

위생행정허가 절차의 두 번째 단계는 CFDA 인터넷 시스템을 활용한 기업정보 및 제품정보 등록이다. 2010년 수입화장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이 시스템을 통해 화장품 수출업체는 수출품목 화장품의 위생행정허가 진행 단계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책임회사의 수권서, 접수수권성명서, 책임회사 영업집조 등을 제출 후 제품에 사용된 원료 및 함량이 포함된 전성분표, 제품의 중문명칭, 원료의 품질규격증명서 등과 같은 제품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한다(대한화장품협회 2017). 제품 등록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은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에 수록되어 있어야 하며,¹⁷⁾

16) SFDA(2009), 856호 『화장품 행정허가 신고, 접수규정』 제5조.

17) CFDA는 2015년 12월 23일 자료 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원료 8,783개)를 확정 발표하였으며 원료목록

동 원료들은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의 배합금지 성분 및 배합제한 성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다.¹⁸⁾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와 배합은 화장품 업체에게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중국 내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CFDA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지만, 중국으로 처음 화장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나 소규모 업체의 경우 제품정보의 등록을 전적으로 책임회사에 위탁하고 있다.¹⁹⁾ 이와 같은 이유로 책임회사는 수출회사의 브랜드명과 품목별 제품에 사용된 원료 및 함유량에 대한 정보 파악이 가능해진다. CFDA 기업정보 및 제품정보 등록은 중국의 입장에서 수입 화장품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화장품 수출업체의 중요한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3. 위생안전성검사

CFDA 기업정보 및 제품정보 등록을 마치면 등록된 원료에 대한 시험검사 즉 위생안전성검사가 이뤄진다. 중국은 위생안전성검사를 SFDA 856호 『화장품 행정허가 신고, 접수규정』 제18조에 따라 CFDA가 인정한 자국 내 허가검사기관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²⁰⁾ 이 기관에서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미생물, 위생화학, 독리학, 인체안전성 등과 같은 시험검사 및 제품에 포함된 원료에 따라 디옥산, 메탄올, 페놀 등의 함유 여부를 검측한다.²¹⁾ 이러한 시험 및 검측을 위한 샘플로 일반 제형인 경우 보통 25ml를 기준으로 특수용도는 20개, 비특수용도는 30개가 제출되며, 각 샘플에 대한 시험검사가 시행되므로 비특수용도화장품의 경우 약 2~3개월, 특수용도화장품은 4~8개월의 법정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²⁾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수출되는 화장품은 수출국에서 원료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위해평가 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치며 동 기관에서 발급한 보고서로 바탕으로 제조판매허가서를 발급받은 제품들이다. 이는 위생행정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제품 생산국 또는 원산국 생산과 판매 증명서’로도 증빙이 가능한 사안이다.²³⁾ 그러나 중국은 상대국

은 www.silat-group.com/Info/download/type/documents/id/101에 게재되어 있다.

18) SFDA(2009), 856호 『화장품 행정허가 신청서류의 요구사항』 제14조 4항, 7항.

19)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2016), 중국의 CFDA 인증제도 Q&A 사례 및 유의사항, p.12.

20) 중국 내 검사기관은 2017년 5월 기준 총 35개소이며 검사기관은 주로 북경, 상해, 광둥 등에 밀집되어 있다. CFDA지정 검사기관 목록은 <http://app1.sfda.gov.cn/datasearch/face3/base.jsp?tableId=108&tableName=TABLE108&title=化妆品行政许可检验机构&bcId=141403272796679344681283623477>에 게재되어 있다.

21) 대한화장품협회(2016), 중국화장품 수입관련 가이드라인, p.13.

22)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2014), 화장품·식품의 중국 위생허가제도 이해와 활용방안, p.25.

의 제조판매허가서는 접수하고 있지만 상대국의 시험검사 기관과 검사보고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화장품 수출업체들은 중국에서 원료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화장품 수출업체들은 부득이하게 중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는 곧 위생행정허가 발급 지연으로 이어져 화장품 수출업체들은 적시에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4. CFDA 기술심사

기술심사는 위생행정허가의 마지막 단계로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제품 출시가 가능한 수준의 시제품에 대한 심사를 의미한다. 기술심사는 CFDA의 화장품안전전문가위원회, 화장품표준전문가위원회, 화장품기술심사평가위원회로 구성된 심사평가센터에서 시행되며²⁴⁾ SFDA 856호 『화장품 행정허가 신청서류 요구사항』 제3조에 따라 <표 2>와 같은 자료 제출이 요구된다.

<표 2> CFDA 기술심사 신청서류 요구사항

CFDA 기술심사 신청서류 (특수용도, 비특수용도화장품 공통사항)
①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 신청서
② 제품 중문명칭 명명근거
③ 전성분표
④ 제품 품질안전 통제 요구
⑤ 제품 원포장(제품라벨, 제품설명서 포함), 중국시장 전용포장 설계가 있을 경우 포장 설계(제품 라벨, 제품설명서 포함)
⑥ CFDA인증 위생안전성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보고서 및 관련자료
⑦ 제품 중 안전위험물질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것은 관련 안전성 평가 자료
⑧ 이미 등록된 행정허가 재중국신고책임회사의 수권서 사본 및 재중국신고책임회사의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직인 날인
⑨ 화장품 사용원료 및 원료원이 광우병 발생지의 고위험물질 사용금지 요구에 부합한다는 승낙서
⑩ 제품 생산국 또는 원산국 생산과 판매 증명서
⑪ 행정허가에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
⑫ 생산 공정의 간략한 서술 및 공정도
⑬ 화장품제품기술요구 문서본 및 전자파일

출처 : SFDA(2009) 856호 『화장품 행정허가 신청서류 요구사항』 제3조를 참조하여 필자 정리

상기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술심사는 위생행정허가 단계 중 2. CFDA 기업정보 및 제품정보 등록, 3. 위생안전성검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총 13가지의

23) SFDA(2009), 856호 『화장품 행정허가 신청서류 요구사항』 제3조

2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2014), 중국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자료집, p.3.

서류제출이 요구된다. 주요 항목별 세부규정을 살펴보면 ②제품 중문명칭 명명근거의 경우 ‘화장품 명명규정’ 및 ‘화장품 명명지침’에 따라 상표명, 통용명, 속성명으로 구분하며 중문 언어 습관에 부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④제품 품질안전 통제 요구의 경우 SFDA(2009) 856호 『화장품 행정허가 신청서류 요구사항』 제 16조 ‘제품품질안전통제 요구’에 따라 원료의 감관지표, 위생화학지표, pH지수 지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심사를 위해 요구되는 추가서류로는 제품 원포장 및 포장 설계, 제조공정도, 화장품 제품기술요구 문서본 등이 있으며 <표 3>과 같은 하부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표 3〉 CFDA 기술심사 시 요구 및 유의사항

기술심사	하부규칙
제품원포장 및 포장설계	• 화장품의 명칭, 생산자의 명칭과 주소, 원산국, 재중신고책임기관 명칭과 주소, 내용량, Lot 번호, 품질보증기한, 등록 문서번호, 사용방법, 보존 조건, 주의사항 등 포함
제조공정도	• 제조공정 약술 및 제조공정 약도 포함 • 제조공정 약술은 제조과정 반영, 제조절차 및 절차 중 포함되는 원료의 조합 포함
화장품제품 기술요구	• 중문명칭, 한어병음명, 처방 성분, 생산공정, 감관지표, 위생화학지표, 미생물지표, 검사방법, 사용방법, 저장조건, 품질보증기한

자료 : SFDA(2010), 454호 『화장품 제품기술 요구규범』을 참조하여 필자 정리

화장품 수출업체는 <표 3>과 같이 CFDA 기술심사 시 요구되는 자료들도 책임회사를 통해 준비하는데 이러한 과정도 기업체의 핵심정보인 제조공정 및 제조과정의 유출 우려가 높다. 또한 기술심사 시 제출 서류가 상기 표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CFDA는 특수용도화장품은 90일, 비특수용도화장품은 20일이 소요된다고 공지하고 있으나 제출 서류 미비로 반려되거나 보완이 요구될 경우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18, 28). 이와 같은 기술심사는 앞서 언급한 위원회별로 이뤄지며 과도한 서류제출과 이에 따른 검토로 인한 심사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IV. 비관세장벽으로서 위생행정허가제도의 문제점

III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중국의 수입화장품에 대한 위생행정허가는 중국 시장 진출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비관세장벽이 수입 화장품의 중국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요소는 대표적으로 다음 세 가지 - (1)정보유출, (2)중복 검사, (3)시간 지연 - 로 구분할 수 있다. 1), 2), 4)단계에서는 재중국책임신고회사를 통해 수출업체의

제품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3)단계에서는 중국이 자국의 위생안전성검사기관이 발급한 보고서만 인정함으로 화장품 수출업체들은 중국에서 원료에 대한 재시험 검사가 불가피하였다. 이러한 검사의 중복은 위생행정허가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양산한다. 또한 4)단계에서 기술 유출의 문제점과 함께 과도한 서류 검토로 인한 심사 기간 지연이 재차 반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자면 <표 4>와 같다.

<표 4> 위생행정허가제도의 문제점 정리

	정보유출	중복검사	시간지연
1) 재중국책임신고회사	○		
2) CFDA 기업정보 및 제품정보 등록	○		
3) 위생안전성검사		○	○
4) CFDA 기술심사	○		○

출처 : III장의 분석을 토대로 필자 정리

그렇다면 화장품수출업체들은 상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세 가지 문제점 즉, 정보유출, 중복검사, 시간 지연과 관련하여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국 화장품 인증제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실증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고자 충북 소재 화장품 관련 업체 134개사 중 대중(對中)화장품 수출 경험업체, 진행 중 및 준비업체 54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²⁵⁾ 그 중 7개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였으며²⁶⁾ 각 문제점에 대한 업체들의 인터뷰 내용을 반영하여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유출의 문제

2016년 들어 중국은 위생행정허가증 미취득 제품의 유통을 전면 차단하면서 위생행정허가는 중국 시장 진입에 필수 요건이 되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경우 중국법인을 설립하여 책임회사로 지정하고 있으며 중국법인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행업체나 유통·판매회사를 책임회사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위생행정허가 신청단계인 CFDA 제품정보등록 및 기술심사를 위해 전성분표, 제조공정과 같은 기업의 핵심적 기술자료들이 책임회사로 넘어감에 따라 수출회사의 제품기밀과 생산공정 정보가 유출될 가

25) 충청북도 대중(對中) 화장품 수출현황조사 대상 업체목록은 부록 참조

26) 설문조사 업체 중 7개 업체를 선정하여(②,⑤,⑭,⑰,⑳,㉑,㉒) 2018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터뷰 실시

능성이 매우 높다.²⁷⁾ 이러한 문제를 경험한 업체들(㉔, ㉕)은 CFDA 기술심사 중 정보 유출로 유사제품이 온라인상에 출시되어 해당 품목에 대한 위생행정허가증 취득을 중도 포기한 경험이 있음을 밝히며 “수입화장품에만 적용되는 책임회사 선정을 통한 위생행정 허가제도에는 외국 화장품들의 제조기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²⁸⁾ 실제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국내 화장품의 상표와 제품 컨셉 및 제품성분을 모방한 화장품이 대거 출시된 사례가 있다(주간무역, 2016.8.18.).²⁹⁾ 중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입지가 상승하자³⁰⁾ 중국 화장품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 화장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는 ‘모방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이러한 모방 전략을 국내 화장품에 대한 기술 유출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책임회사 위임을 통한 위생행정허가는 자국 내 유통되는 수입화장품의 관리감독과 이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위생행정허가 시 요구되는 수출업체의 핵심기술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화장품 수출업체들이 책임회사 선정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유출에 따른 문제점 발생 차단을 위해 인터뷰에 응한 한 업체(㉔)는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있는 조치와 책임회사를 통해 수입화장품에 대한 기밀유출이 발견될 경우 법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 간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도 언급하였다.

2. 중복검사의 문제

중국은 화장품 제조에 금지된 원료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국 내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한 위생안전성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CFDA의 기술심사 시 중국 내 허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보고서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한국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이화학, 미생물검사 등을 완료한 제품으로 이에 따른 검사보고서도 발급된다.³¹⁾ 특이사항이 없는 제품에 한해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하므로 중국 수출 전 화장품 원료에 대한 검사과정을 반드시 거

27) ㉔,㉕,㉖업체 수출담당자 인터뷰 내용 인용

28) ㉖업체 수출담당자 인터뷰 내용 인용

29) 한국 화장품의 상표도용사례는 2015년 5월 기준 1,005건에 달한다(주간무역 2016.8.18.).

30) 중국 전체 화장품 소비자의 약 65%를 차지하는 20~30대 여성의 68%가 한국 화장품의 품질에 만족하고 있으며, 이들 중 86%는 재구매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비즈니스리포트 2016.08.29.).

31) 2018년 8월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은 17개소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brd/m_74/view.do?seq=42988에 게재되어 있다.

치게 되어있다. 그러나 중국이 자국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보고서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화장품 수출업체는 원료에 대한 중복적인 시험검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㉔, ㉕업체는 각각 “중국 위생행정허가 시 제출서류에는 국외 시험검사 기관의 검사보고서 항목이 없다”며 “이러한 이유로 화장품 수출업체들은 중국에서 원료에 대한 시험검사를 다시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표 5〉 한국·중국 화장품 시험검사항목 비교

한국 화장품 검사항목	중국 화장품 검사항목
1. 일반화장품 (1) 내용량 (2) pH (3) 메탁올 (4) 디옥산 (5) 프탈레이트류 : DEHP, DBP, BBP (6) 포름알데히드 (7) 중금속 : 납, 니켈,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8) 미생물 : 총호기성생균,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2. 기능성화장품 (1) 미백성분: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알파비사보롤, 유용성 감초추출물 (2) 주름성분: 레티놀, 아데노신 (3) 복합성분 : 알부틴&아데노신, 나이아신아마이드&아데노신, 유용성감초추출물 & 아데노신 (4) 자외선차단성분 :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 이소야밀 p-메톡시신나메이트, 티타늄디옥사이드, 징크옥사이드 (5) 기타 : 히드로퀴논 *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요구되는 안전성평가 항목 (1) 단회투여독성시험 (2) 1차피부자극시험 (3) 안점막자극 또는 기타점막자극 시험 (4) 피부감작성시험 (5) 인체접촉시험 (6) 광독성 및 광감작성시험 (7) 인체누적 접촉시험자료 및 비임상시험	1. 비특수용도화장품 (1) 미생물 - 세균총수, 분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곰팡이균&효모균 (2) 위생화학 - 수은, 납, 비소, 메틸알콜, 포름알데히드, Mercaptoacetic, 하이드로퀴논, 클레졸, 성 호르몬, 자외선차단제, cantharides, 항생제, 산화형 염모제 염료, AHA, Metronidazole, Nitrogen mustard, 비듬제거제, pH (3) 독리검사항 - 급성·중복피부자극시험, 급성안자극시험 2. 특수용도화장품 (1) 미생물 (2) 납, 비소, 수은 (3) 메탄올 (4) Nitrogen mustard, cantharides (5) 산화형 염모제의 원료 (6) Mercaptoacetic (7) 호르몬 (8) Formaldehyde (9) 자외선차단제 (10) Carbollic acid, hydroquinone (11) pH (12) α-hydroxy acid (13) 급성안자극시험 (14) 급성피부자극시험 (15) 중복피부자극시험 (16) 피부 변태반응시험 (17) 피부광독성시험 (18) 인체패치테스트 (19) 인체시용테스트(20) 인체SPF수치 (21) 쥐장티푸스사문스균/회복돌변시험 (22) 체외포유동물세포염색제기형시험

출처 : 한국·중국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홈페이지 내 검사항목 참조 필자 편집

상기 〈표 5〉는 한국의 화장품 원료에 대한 시험검사와 중국의 위생안전성검사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의 화장품시험검사 항목을 비교해 놓은 것이다. 먼저 한국과 중국의 일반화장품/특수용도화장품 검사항목을 비교해보면 1-(7)중금속 검사/1-(2) 위생화학 검사, 1-(8)미생물 검사/1-(1)미생물검사에서 중복성이 발견되었다. 또

한 중국 특수용도화장품 검사항목 중 독리학 검사인 2-(13)~(20)의 경우 한국 기능성 화장품 허가심사 시 제출하는 안전성평가항목과 중복된다.

이와 관련하여 ㉔업체는 “원료에 대한 검사중복으로 인한 제품출시 지연은 결국 매출로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시험검사서의 전체 인정이 어렵다면 일부분이라도 인정하도록 중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중국은 해외에서 시험한 자외선차단지수 검사보고서는 인정하고 있다.³²⁾ 그러나 그 인정 폭이 자외선차단지수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비특수용도 화장품 수출업체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다.

한편 중국이 화장품 원료 안전성 확보로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해 위생안전성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자국 시험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복적인 시험검사를 요구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2017, 가기경). 중국의 위생안전성 검사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든 화장품 원료에 대한 중복 검사는 화장품 시장 특성상 트렌드의 급속한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화장품 수출업체의 입장에서 수출지연으로 이어져 업체들의 결국 매출 실적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점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3. 시간지연의 문제

본 연구를 위한 현장 조사에 의하면 위생행정허가증 발급까지 평균적으로 8개월에서 최대 2년이 소요되며 위생안전성검사와 CFDA 기술심사 단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³³⁾ 이에 대한 원인으로 우선 중국의 시험검사기관 부족을 꼽을 수 있다(2017, 가기경). 2015년 중국의 위생안전성 검사기관은 총 27개로 화장품 위생허가 신청 제품 수 대비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2017년 8곳을 추가 지정해 총 35개 기관으로 시험검사 지연 현상을 해소하려고 했다. 하지만 시험검사 기관은 늘었으나 개정된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의 적용과 물량 과다로 인한 시험검사 거절 등으로 기간이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㉕, ㉖, ㉗). 이에 대하여 ㉕ 업체는 ‘비교적 물량이 적은 시험검사 기관을 찾아 원료검사를 받았지만, 등록부터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예상보다 3개월 더 소요되어 신제품 출시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며

32) SFDA(2009) 856호 『화장품 행정허가 신청서류 요구사항』 제 18조에 따르면 본 검사보고서에는 실험실 자격인증서, 실험실의 ‘의약품 임상시험 시행에 관한 기준(Good Clinical Practice, GCP)’, ‘우수실험실운영 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 GLP)’을 엄격히 준수하였다는 증명 또는 기타 실험실의 자질을 설명하는 자료가 포함된다.

33) CFDA홈페이지에는 위생안전성검사 시 특수용도화장품은 약 4개월~8개월, 비특수용도화장품은 약 2개월~3개월이 소요되며 CFDA기술심사 시 특수용도화장품은 심사 90일, 비준 20일, 비특수용도화장품은 심사 20일이 소요된다고 공지하고 있다.

시간 지연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중국 시장 진출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원료검사 이후 CFDA 기술심사 단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CFDA 기술심사는 13종류의 서류준비 작업부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관련 부서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한 부서에서 심사가 지체될 경우 연이은 시간 지연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시간 지연은 특히 트렌드에 민감한 화장품 품목일수록 적시에 출시되지 못해 영업 손실이 뒤따르는 결과를 초래한다.³⁴⁾

일부의 경우이지만 화장품에 CFDA의 ‘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원료가 포함될 경우 별도의 행정허가 과정을 거치며 신원료 사용허가까지만 약 2년이 소요된다. 충북 소재 한 업체³⁵⁾는 2015년 8월 신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의 위생행정허가를 진행하였으며 동 원료가 2015년 12월 23일 자로 ‘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에 등록되었음에도 2년이 지나도록 허가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위생행정허가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현지 생산허가를 취득함으로써 동 제품에 대한 별도의 위생행정허가 없이 중국 판매를 시작하였다. 이 업체는 중대형 규모의 화장품업체로 시간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중국 현지공장 설립이라는 대안으로 해소하였다. 그러나 중국으로 수출하는 대다수 국내 화장품기업들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안이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4. 비관세장벽으로서의 위생행정허가

지금까지 논의된 중국의 수입화장품에 대한 위생행정허가의 문제점으로 첫째, 책임회사 선정을 통한 정보유출 가능성이 우려되며, 둘째, 한국의 시험검사와 위생안전성 검사의 중복성, 그리고 끝으로 이에 따른 시간 지연은 곧 위생행정허가증 발급 및 제품 출시 지연 또는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CFDA 기술심사에도 13종류의 과도한 서류제출과 항목별 심사로 인한 시간 지연의 문제와 제품의 기술공정과 같은 핵심기술이 책임회사를 통해 유출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중국이 자국 산업 보호라는 측면에서 수입화장품에 대한 각종 기술규제 조치를 취한 결과에 기인한다.

34) 기술심사 지연과 관련하여 ㉔업체는 “여름용 제품 출시를 위해 겨울부터 위생행정허가를 준비하였으나 CFDA 기술심사 시 서류 보안등의 이유로 허가가 늦어지면서 제품 출시를 포기”한 경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35) 업체의 요청에 따라 기업명 및 원료명은 밝히지 않도록 한다.

2001년 중국은 WTO 가입으로 국제교역질서 체제에 합류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화장품과 같은 유치산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도모하고 자국내 수입화장품의 유입과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WT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기술규정을 위생행정허가에 적용하고 있다. 중국의 화장품 기술규정과 관련된 법령만 해도 2017년 기준, 66건에 달하며 그 규정은 화장품 원료배합, 제한물질, 표시관리, 라벨규정까지 점점 더 세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³⁶⁾ 이러한 수입화장품에 대한 규정은 중국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으며 이에 일부 대중 화장품 수출업체들은 현지 생산 방식으로 중국의 위생행정허가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화장품 제조에 있어 다년간의 노하우가 축적된 이들은 현재 중국에서 자사 브랜드 생산과 중국 로컬브랜드 일부 제품 생산을 시작하면서 의도치 않게 중국 로컬브랜드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매일경제 2017.7.24.). 이러한 중국 로컬브랜드들의 품질향상은 곧 한국 화장품의 입지를 위협하며 중국 화장품 시장의 또 다른 진입장벽으로 형성되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의 로컬브랜드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는 한국 브랜드들은 중국의 1~2선 도시에서 3~4선 도시로 시장을 옮겨가고 있지만, 그 도시들도 이미 수입 화장품에 앞서 중국의 로컬브랜드들이 자리 잡은 시장이므로 한국 화장품은 또다시 중국 제품과 경쟁하게 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지난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은 다자간 무역규범 준수를 위한 관세와 무역 장벽을 낮추는 약속을 했다는 의미이다. WTO 가입을 위해 중국은 2,700여 건의 국내 법령을 국제수준에 맞게 수정하고, 가입 이후에도 5년간 매년 2만 건 정도의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연합뉴스, 2011.12.06.).³⁷⁾ 그러나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36) 대한화장품협회(2017), 중국화장품 관련 법규집(번역판) 목차 참조

37) 중국은 WTO 가입 시 제시한 비관세조치 철폐 이행조건(아래 <표 6> 참조)에 따라 2005년 총 424개 세목에 대한 비관세조치 철폐를 완료하였다(KIEP 2017).

<표 6> 중국 비관세조치 철폐 이행조건

철폐시기	비관세조치 해당 세목 수	철폐시기	비관세조치 해당 세목 수
가입 시	209	2004년	84
2002년	80	2005년	35
2003년	16	합계	424

출처: KIEP(2017), p.26.

및 대외확장에 따른 주요국, 대표적으로 미국 등과의 무역마찰, 위안화 저평가 문제, 금융시장에 대한 개방 확대 요구,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 인정 여부 등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 간 경쟁 심화까지 더해지면서 중국은 기존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에서 내수확대 및 소비유턴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내수 진작 정책이 인기 소비재에 대한 수입품의 국산품으로의 대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THAAD 배치 논란의 여파도 있지만, 그 이전까지 중국에 대한 한국 화장품 수출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³⁸⁾ 그러나 2016년 중국은 위생행정허가증 미취득 화장품에 대한 중국 진출을 전면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사실상 수입 화장품에 대한 기술규정을 대폭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에서 시행 중인 화장품에 대한 위생행정허가 취득을 위한 과정에 있어 한국의 화장품 수출업체들이 직면하는 장벽들을 분석하였다. 물론 중국 내 관련 법규에 의해 어느 정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위생행정허가를 취득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존재하고 있음을 본 연구는 밝히고 있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문제를 ‘정보유출’, ‘중복검사’, 그리고 ‘시간 지연’으로 구분하여 허가 취득과정들이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정보유출로 인한 중국 내 저가 유사상품의 출현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중복 검사와 허가 취득 과정에서의 시간 지연으로 인한 제품 출시 지연은 화장품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들에게는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화장품 산업은 유치 산업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오랜 역사와 기술력을 겸비하고 중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산, 미국산, 그리고 일본산 화장품에 대한 견제는 현시점에서 유치산업인 중국 화장품 산업의 도전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중국의 정치 시스템도 또한 한국산 화장품의 자유로운 수입을 원하는 이익 집단 - 예를 들어, 소비자, 화장품 수입 및 판매업자 등 - 의 압력에서 보다 자유롭게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중국 시장에서, 즉 소비자가 한국 화장품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자국 화장품 산업 육성, 이를 위한 경쟁 상품 - 예를 들어, 한국산 화장품 - 의 중국 내수 시장 진입 제한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화장품이 중국 시장의 진입장벽을 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중국 화장품 인증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다. 이는 단지 그 규정이 가지고 있는 문맥적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닌 각 규정의 조항별 분석을 통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

38) KOTRA에 따르면, 2016년 10월까지 중국의 한국 화장품 수입은 전년 대비 56.7%나 급증하였다 (KOTRA, 2016.12.13.).

하고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제시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한 예로 재중국책임신고회사 지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들 간 협의를 통한 공동의 중국법인 설립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중국과의 양자 차원에서, 그리고 WTO의 다자 차원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작동되는 과도한 기술규정으로 인한 시장 접근의 걸림돌인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수입 화장품에 대한 규제 강화, 이로 인한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중국 국내 화장품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에도 한국의 화장품 수출업체들에게 중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남아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기술 향상을 꼽고 있지만, 기술 유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기술 향상을 통한 중국 시장 진출은 큰 의미가 없다.

과거 EU가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하였던 부분이 한국의 높은 비관세장벽 철폐였다. 그러나 한중 FTA는 화장품 부분을 포함하여 다른 분야에서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논의가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2018년 한중 FTA 서비스 및 투자 후속 협상이 개시되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화장품 및 식품분야의 비관세장벽 및 중국 투자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한겨레 2018.03.22.). 화장품 분야의 비관세장벽 철폐가 목적이지만, 한국 정부의 협상 포지션은 왜 비관세장벽을 철폐해야하는지 - 기술유출, 중복검사, 시간 지연 등 - 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과의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부록>

충청북도 대중(對中) 화장품 수출현황조사 대상 업체

- 조사대상 : 충청북도 소재 화장품 관련업체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C2042)/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9)) 134개 중 중국수출 유경험/진행중/준비중 54개 업체
- 조사기간 : 2018년 1월 20일 ~ 10월 19일

	업체명	수출품목		업체명	수출품목
1	(주)버코*	비누, 기초화장품	28	(주)**우	미용비누
2	(주)**화장품	기초화장품	29	(주)**화장품	기초화장품
3	(주)**화학	방향제	30	(주)**바이오**	마스크팩
4	(주)**이*텍	기초화장품	31	(주)바이***	기초화장품
5	(주)세**씨	두발용 화장품	32	(주)뷰****	기초화장품, 마스크팩
6	태***스	어린이용 화장품	33	(주)에*엔****	클렌징폼, 미용비누
7	**코스(주)	기초화장품	34	(주)**이*	어린이용 화장품
8	***코리아	색조화장품	35	(주)**산업	미용비누
9	**나라	미용비누	36	(주)한국**연구**	기초화장품
10	(주)엠**에*	기초화장품	37	**건강**	미용비누
11	(주)에****	기초화장품	38	(주)***코리아	마스크팩
12	(주)**바이오	기초화장품	39	(주)***코스메틱	기초화장품
13	(주)원**코	미용비누	40	(주)**뷰티	남성용화장품
14	(주)**코리아	마스크팩	41	(주)스킨	미스트
15	(주)**화장품	기초화장품, 마스크팩	42	****메틱(주)	기초화장품
16	(주)**체	마스크팩	43	P****S	방향제
17	(주)**나라	미용비누	44	**드	미용비누, 마스크팩
18	(주)**텍	기초화장품	45	바이오****(주)	두발용 화장품
19	(주)**화장품	두발용 화장품	46	(주)에****씨	기초화장품
20	(주)**메디칼	마스크팩	47	(주)**림	기초화장품
21	유***씨	두발용 화장품	48	(주)에**	두발용 화장품
22	(주)**스	미용비누	49	(주)천	마스크팩
23	(주)바이오****	미용비누	50	(주)***코리아	마스크팩, 두발용 화장품
24	(주)**패밀리	비누, 방향제	51	(주)**르	기초화장품
25	(주)한국****연구*	기초화장품	52	***한국****연구*	기초화장품
26	(주)케이**	기초화장품	53	(주)코**바**	마스크팩
27	(주)뷰티***	기초화장품	54	(주)코엔에****	세안제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가기경(2017), 「2017년 中 화장품시장 분석과 법규 변화, 그리고 대응요령」 과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김석준(2002), 「국가 능력과 경제 통치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종덕, 최보영, 엄준현, 정민철(2016),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구축을 중심으로” KIEP 연구자료 16-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대한화장품협회(2017), 「중국화장품 관련 법규집(번역판)」서울: 대한화장품협회
- 대한화장품협회(2017a), 「중국 화장품 수출 길잡이: 위생행정허가 안내서」 서울: 대한화장품협회
- 대한화장품협회(2016), 「중국화장품 수입관련 가이드라인」 서울: 대한화장품협회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2014), 중국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자료집
- 이상민(2004), “비관세장벽의 경제사회학적 분석- 일본과 한국의 수입자동차 시장 비교” 「한국사회학」 38(3), pp.81-108.
- 이정자, 이명규(2008), 국내외 화장품 규제현황 및 비교, 「의약품법규학회지」 3권 제1·2호, pp.57-70,
- 조문희, 김종덕, 박혜리, 정민철(2017),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낙균, 김정근, 박순찬(1990),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용석, 차문중, 김종일(2006), 「중국의 경제성장과 교역증대가 우리 경제에 갖는 의미: 한·중 간 경쟁관계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 홍춘욱(2016), “비관세장벽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는?” Global Hot Issue, 키움증권
-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2016), 「중국의 CFDA 인증제도 Q&A 사례 및 유의사항」 북경: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 KOTRA(2018), “2018년 글로벌 비관세장벽 동향” Global Market Report 18-025, KOTRA.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2016), 「품목별 중국 인허가 대응방안」 과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 외국문헌

- Autor, David H., David, Dorn and Hanson, Gordon H.(2016), “The China Shock: Learning from labor market adjustment to large changes in trade” NBER Working Paper series 21906,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aldassarri, Mario and Imbriani, Cesare and Salvatore, Dominick(1996), The International System between New Integration and Neo-Protectionism, London: Palgrave Macmillan.
- Bieling, Hans-Jürgen, Haas, Tobias and Lux, Julia(2013), Die Internationale Politische Ökonomie nach der Weltfinanzkrise, Wiesbaden: Springer VS
- Campbell, John L.(2018) American Discontent: The Rise of Donald Trump and Decline of the Golden 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arooqar, Rana(2016), Makers and Takers: The Rise of Finance and the Fall of American Business, New York: Crown Business
- Findlay, Ronald and Wellisz, Stanislaw(1982), “Endogenous Tariffs, the Political Economy of Trade Restrictions, and Welfare” in Jagdish N. Bhagwati(ed), Import Competition and Response,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pp.223-244,
- Mansfield, Edward D. and Busch, Marc L.(1995), “The Political Economy of Nontariff Barriers: A Cross-National Analysis” International Organisation, Vol.49,. No.4, pp.723-749.
- Saito, Mika, Henn, Christian, Gregory, Rob and McDonald, Brad, J.(2010), “Trade and the Crisis: Protect or Recover”, IMF Staff Position Not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Harrigan, J. (1993) “Openness to Trade in Manufactures in the OECD.”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40, pp.23-39.
- He, Juan (2015), The WTO and Infant Industry Promotion in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Routledge
- Henn, Christian and McDonald, Brad, J.(2011), “Protectionist Responses to the Crisis: Damage Observed in Product-Level Trade”, IMF Working Paper WP/11/139,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Krasner, Stephen(1976), “State Power and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Trade” World Politics, Vol.28, No.3, pp.317-347.

- OECD(2005), "Looking Beyond Tariffs: The role of non-Tariff Barriers in world Trade" OECD Trade Policy Studies, Paris: OECD
- Rushford, Greg (2003). "The World's Oldest Infant Industry". The Rushford Report. Retrieved 22 January 2010.
- UNCTAD(2012),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Tariff Measures" UNCTAD/DITC/TAB/2012/2/Rev.1, UNCTAD.
- USAID(2013), "Nontariff Barriers to Trade: Regional Agricultural Trade Environment Summary" USAID Maximizing Agricultural Revenue through Knowledge, Enterprise Development and Trade(MARKET) Project, USAID.
- Volle, Jeffrey J.(2018), Donald Trump and the Know-Nothing Movement: Understanding the 2016 US Election, Cham: Palgrave Macmillan.

3. 인터넷 자료

- 사드 2년, K뷰티 5년 호황 끝, 중국 화장품에 밀려났다(2018.10.25.), 「중앙일보」 Available at <https://news.joins.com/article/23066010>
- 아직 식지 않은 화장품 한류, 지난해 무역흑자 첫 4조원 돌파(2018.7.13.) 「한국일보」 Available at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7121526311248>
- 중국 위행허가 재중국신고책임회사 전권, 신중한 선정 필요(2016.07.01.), 「뷰티경제」 Available at <http://www.theb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265>
- 중국인, 해외 화장품 브랜드 선호 여전(2016,08,29), 「비즈니스리포트」 Available at <http://www.businessreport.kr/news/articleView.html?idxno=3619>
- 중국 화장품 시장 커져도 토종 기업만 득세(2018.01.09.), 「이투데이」 Available at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82760>
- 한국 화장품 시장, 인도에 밀려 6년 만에 세계 9위로 하락(2018.5.21.), 「NEWS 1」 Available at <http://news1.kr/articles/?3322041>
-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사드보복 '실질적 중단' 재차 요구(2018.3.22.), 「한겨레」 Available at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7183.html
- 화장품 직접 생산 ... 공장 짓는 뷰티업계(2017.07.114.), 「매일경제」 Available at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496670>
- ITC, 백악관에 '한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제출...여론(2017.12.11.), 「머니투데이」 Available at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21020590420089&outlink>

=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국가기록원, '조달 및 물자관리: 토쿄라운드 정부조달협정'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117> (검색일: 2018년 10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시험기관 목록', Available at http://www.mfds.go.kr/brd/m_74/view.do?seq=42988 (검색일: 2018년 11월 2일)

CFDA, '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 Available at www.silat-group.com/Info/download/type/documents/id/101 (검색일: 2018년 11월 2일)

CFDA, '위생안전성검사 시험기관 목록' Available at <http://app1.sfda.gov.cn/datasearch/face3/base.jsp?tableId=108&tableName=TABLE108&title=化妆品行政许可检验机构&bcId=141403272796679344681283623477> (검색일: 2018년 11월 1일)

G20 Information Centre, Available at <http://www.g20.utoronto.ca/analysis/2009protectionism0331.pdf> (검색일 2018년 10월 20일)

KOTRA(2016.12.13.), '본격화되는 중국의 내수 진작책' Available at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56053> (검색일: 2018년 11월 10일).

UNCTAD, "Definition of NTMs" Available at <https://unctad.org/en/Pages/DITC/Trade-Analysis/Non-Tariff-Measures/NTMs-Classification.aspx> (검색일: 2018년 10월 25일).

UNCTAD, "MAST Group" Available at <https://unctad.org/en/Pages/DITC/Trade-Analysis/Non-Tariff-Measures/MAST-Group-on-NTMs.aspx> (검색일: 2018년 10월 25일)

Use of non-Tariff Barriers for protection of domestic industries and its implications: focusing on the Chinese Cosmetic Certification System

Sung-Wook Yoon

Handara L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how the Chinese cosmetics certification system works as a Non-Tariff Barriers(NTBs) for Korean exporting companies to access the Chinese market. China is the largest market for Korea's cosmetic exports, but China's policy of protecting domestic industry has become a barrier to Korea's cosmetics exports to China. Therefore, this research, through the analysis of regulations of the Chinese certification system for imported cosmetics, revealed that there are such problems as ① information leakage ② duplication of inspection ③time delay. In order to verify those problems, surveys and face-to-face interviews with Korean cosmetic exporting companies to China have been conducted. In conclusion, Chinese cosmetics certification system not only protects its own industry, but also serves as a NTBs to disturb the access of imported cosmetics to the Chinese market in order to foster Chinese cosmetic industry.

〈Key Words〉 Non-Tariff Barrier, Cosmetics Certification System, Trade Barrier, Chinese Cosmetic Industry, Protectionism